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0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818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redacted]시장
	2. [redacted]군수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구합6219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31.
판 결 선 고	2017. 6. 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644,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0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박재우

판사 정승규